



의 안 번 호	제 호
회 의 연 월 일	2026. . . (제 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안보수사국)
제출연월일	2026. . .

안보기획관리과장, 안보관리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북한 도발 가능성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호)

다.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호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제시 요청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법 제6조 후단에 따라 제지하려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과 의견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4의2.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제시 요청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법 제6조 후단에 따라 제지하려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u> <u>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과 의견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제7조(보고)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제7조(보고) ----- ----- -----		

한다. 1. ~ 3. (생략) <u>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u> <u><신설></u> 5. 삭제 6. · 7.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u>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u> <u>4의2.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u> 6. · 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3150 - 1494